

(4)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교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함

- (3)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예1) 임신한 배우자가 15주 이내 유·사산한 경우: 유·사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예2) 임신한 배우자가 16~20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유·사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5)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

-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 학교장은 산모의 건강 및 수업 등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 전·후를 통하여 출산휴가를 실시하도록 지도

【사례1】 2020년 6월 13일(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 시 9월 1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8일), 90일이 초과되는 9월 11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사례2】 육아휴직 중인 여성교원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출산예정일(20.9.14.)에 맞춰 미리 복직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9.7.)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복직 신청을 변경하지 않아 학교(기관)에서는 20.9.14.일부터 해당 여성교원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처리를 완료하였음. 하지만,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9.7.)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성교원은 결국 총 83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사례3】 다태아 중 분만시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된 경우 휴가 부여일수는?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 따르면 사산 시점부터 새로이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분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임신주차의 유산·사산 휴가와 남은 출산휴가 중 긴 기간을 부여함

☞ 다태아 중 유사 사례로,

- 1명 정상 출산, 1명 유산된 경우에는 해당 임신주차의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에 대해서는 단태아 기준으로 출산휴가 부여함
-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에는 해당 임신주차의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함
-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에는 각각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함. 단, 유산일을 기준하여 부여하되 기간이 중복될 경우 첫 번째 유산·사산휴가는 즉시 종료하고 두 번째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함

다) 난임치료시술휴가

(1) 여성교원

(가)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사용 불가

(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의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